

**토석채취 [ ] 허가  
[ ] 변경허가      신청서  
[ ] 기간연장허가**

(앞쪽)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(변경허가)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
------	-----	-----	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	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	

산지 소유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
산지 소재지	
--------	--

산지편입 면적	토석채취장 m <sup>2</sup>	부대시설					완충구역 m <sup>2</sup>
		계 m <sup>2</sup>	산물처리장 m <sup>2</sup>	진입로 m <sup>2</sup>	관리사무소 m <sup>2</sup>	그 밖의 시설 m <sup>2</sup>	

토석채취· 반출기간		입목벌채 (굴취)기간	
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	--

토석채취 계획	용도	토석의 종류	신청량			채취방법
			매장량 m <sup>3</sup>	가채매장량 m <sup>3</sup>	반입량 m <sup>3</sup>	

입목벌채	벌채구역면적 m <sup>2</sup>	나무의 종류	본수 본	재적 m <sup>3</sup>

변경사항	변경 전	변경 후	사유

「산지관리법」 제25조제1항·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·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[ ]허가 [ ]변경허가 [ ]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첨부서류	<p>1. 토석채취허가신청</p> <p>가. 사업계획서{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, 채취방법,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(석재에 한정합니다), 토석처리계획(석재에 한정합니다), 연차별 생산·이용계획,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} 1부</p> <p>나.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다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</p> <p>라.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(쇄골재용 석재의 굴취·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마.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(건축용·공예용·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·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바.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「산지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 실측도 1부</p> <p>사.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된 자(이하 "일반측량업자등"이라 합니다)가 측량한 구적도(求積圖) 1부</p> <p>아.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산림조사서(숲의 종류, 임상, 나무의 종류, 숲의 나이, 평균나무높이, 입목축적을 포함하고,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자. 복구공중·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</p> <p>차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·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</p> <p>카. 채석경계성평가보고서(「산지관리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</p> <p>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·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(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) 1부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</li> <li>2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기사·토목기사·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</li> <li>3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림산업기사·토목산업기사·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 </p> <p>2.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: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</p> <p>3.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</p> <p>가.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, 사용·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·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) 1부</p> <p>나.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</p> <p>다.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·축산시설의 소유자, 주민(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), 공장의 소유자·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(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,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)</p>
수수료	<p>1. 토석채취허가신청</p> <p>가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: 2만원</p> <p>나.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: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</p> <p>2.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: 없음</p> <p>3.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: 없음</p>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처리절차

